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김남근 · 김문수 · 민병덕
이훈기 · 박선원 · 이주희
박정현 · 이강일 · 남인순
김우영 · 김 윤 · 김현정
진성준 · 최혁진 · 염태영
백승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,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.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.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,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

한 정도,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39조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3항 본문 중 “법원은 그”를 “그”로, “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”를 “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”을 “제3항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고려하여야 한다”를 “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